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 제·개정 이유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전자화결과 통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방법 개선 (안 제19조)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전자화결과 통지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통지하도록 개선

특허청 훈령 제1008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출력하여'를 '출력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9조(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p> <p>① 전자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의 전자문서 내용을 출력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특허청장 명의로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p> <p>① 전자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의 전자문서 내용을 출력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특허청장 명의로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